

의안번호	2214040
의 퇴 인	강선우의원
회 답 일	2025. 12. 15.
추 계 번호	25C5925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7조의4(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)	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함(제1항) 조사위원회의 업무,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7조의4(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27조의4)

- 개정안에 따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

- 현재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등의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고 있고, 2025년 기준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을 위해 280억 3,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
-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를 위한 별도의 지원 조직을 신설하거나, 아동권리보장원의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은 조사위원회의 업무,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위원회를 위한 별도 지원조직의 설치 여부, 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현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 - 별도의 지원조직이 설치되는 경우 지원조직의 인건비, 운영비 등의 편성이 필요하고, 지원조직의 규모 및 아동권리보장원 인력의 활용 여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
- 참고로, 가습기살균제사건, 4·16세월호참사 조사를 위해 설치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(2018년~2022년)의 경우 84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지원조직이 설치되었음
 -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2022년 예산 기준 지원조직 인건비는 50억 8,600만원, 운영비(기본경비, 임차료, 여비, 자산취득비 등 포함)는 47억 8,400만원임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